

## [ ] 현금거래 확인신청 [ ] 신용카드매출전표·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 (앞쪽)

신청인	① 성 명	② 주민등록번호
	③ 주 소	
	④ 전 화 번 호 (자택) (직장) (휴대전화)	

공급자 (발급 거부자등)	⑤ 상 호(법인명)	⑥ 사업자등록번호
	⑦ 성 명(대표자)	⑧ 전 화 번 호
	⑨ 소 재 지	

신고 유형	⑩ 신용카드 등	[ ]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함 [ ]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	
	⑪ 현금영수증	[ ]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함 [ ] 사실과 다르게 발급함 [ ] 발급된 현금영수증이 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발급이 취소됨 [ ]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함(미가맹점 포함) [ ] 전문직 등 현금매출명세서상 현금거래누락 및 과소신고	

신고 내용	⑫ 거 래 일	⑬ 거래가액	
	⑭ 품 목	⑮ 수 량	⑯ 단 가
	⑰ 거 래 증 명		
	⑱ 그 밖의 참고사항		

[ ]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21조의5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현금거래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[ ] 「국세기본법」 제84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, [ ] 「소득세법」 제162조의2제3항 및 제162조의3 제5항, [ ] 「법인세법」 제117조제3항 및 제117조의2제5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자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 
지방국세청장 귀하  
국세청장

첨부서류	영수증, 무통장입금증 등 신고내용이 사실이라는 증명자료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포상금 지급계좌	은행	지점	계좌번호
----------	----	----	------

## 작성 방법

1. 이 서식은 거래일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사용합니다.
  - 가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21조의5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라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: 5년
  - 나. 「국세기본법」 제84조의2제1항제3호, 「법인세법」 제117조제3항 또는 「소득세법」 제162조의2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급을 거부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: 1개월
  - 다. 「국세기본법」 제84조의2제1항제4호, 「법인세법」 제117조의2제5항 또는 「소득세법」 제162조의3제5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: 5년
2. 공급자(발급거부자 등)란은(㉕~㉙) 확인 가능한 부분까지 적습니다. 추가사항은 "㉚ 그 밖의 참고사항"란에 적습니다.
3. 신고유형란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"√"표시를 하며, 한 곳에만 표시하여야 합니다. ㉛ 신용카드 등은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다른 직불카드,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,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2 제1항 제4항에 따른 기명식 선불카드, 직불전자지급수단,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를 포함합니다.
4. "㉚ 그 밖의 참고사항"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.

### ※ 신고서의 처리

- 1) 현금영수증·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
  - 신고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되며, 포상금이 지급됩니다.
  - 발급 거부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- 2) 거래당시 신고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에 의하여 현금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봅니다.
- 3) 현금영수증 미가맹점과의 현금 거래분과 전문직사업자 등이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의 누락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봅니다.